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 (02-2100-2950)	담 당 자	송 용 민 사무관 (02-2100-2953)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 (02-2100-2830)		최 범 석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김 성 우 (02-3145-8350)		김 상 현 팀 장 (02-3145-8356)
	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정 신 동 (02-3145-8170)		박 상 만 팀 장 (02-3145-8190)

제 목 :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) 선정

◆ 국내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0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로 선정 (전년 대비 제주은행이 D-SIB에서 제외)

1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

□ 금일('20.6.24일)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*)를 아래와 같이 선정

*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

- (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)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
- (시스템적 중요 은행)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

□ 전년도와 비교하여 제주은행(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)이 D-SIB에서 제외*됨

*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(20.4.17.)에 따라 소규모 지방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(1%p) 면제

<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>

◇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이 D-SIB 선정 기준을 상회

- 다만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-SIB에서 제외 ('은행업감독규정' 제92조, 제93조)

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



2

향후계획

-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'21년중 1%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,
 -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서 제외된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(1%p)를 즉시 해제*하여 자본부담을 경감 ('20.6월말 BIS자기자본비율부터 적용)

* 바젤위원회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(G-SIB)에 부과되는 자본적립의무와 관련하여, 중요도가 커져 의무수준이 높아진 경우 12개월 이내 이를 충족해야 하지만 중요도가 낮아져 의무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즉시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음(BCBS, '18.7)

'21년 D-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(%)

	기본 적립비율	자본보전 완충자본 ¹⁾	경기대응 완충자본 ²⁾	D-SIB 추가자본	적립필요 자본
보통주비율	4.5	+2.5	+0.0	+1.0	8.0
기본자본비율	6.0	+2.5	+0.0	+1.0	9.5
총자본비율	8.0	+2.5	+0.0	+1.0	11.5

- 1)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.5%의 완충자본 부과
- 2) 신용평창기에 최대 2.5%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(현재 0%)

- 향후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D-SIB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이를 안내할 계획임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본 자료를 인용
보도할 경우 출처를
표기해 주십시오.
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
prfsc@korea.kr

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 시스템적 중요 은행 제도

- 바젤위원회(BCBS)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·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
 - 이에 금융안정위원회(FSB)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(G-SIB)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%~3.5%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
 - 더불어,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(D-SIB)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·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
-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'16년부터 D-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
 - '20년도(적용연도 기준)에는 11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D-SIB*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**을 적립토록 하였음

* D-SIB(5개사) : 하나지주, 신한지주, KB지주, 농협지주, 우리지주

D-SIB지주 자은행(6개사) :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제주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

** (16년) 0.25% → (17년) 0.50% → (18년) 0.75% → (19년 이후) 1.0%

<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개요 >

구분	G-SIB	D-SIB
정의	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(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)	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)
평가주체	금융안정위원회(FSB)	각국 감독당국
대상	글로벌 대형은행	국내 대형은행
추가적립자본	1.0~3.5%	1.0~2.0%

2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개요

□ **(평가대상)** 은행지주회사, 은행* 및 외은지점('19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)을 평가대상에 포함

- * ① 수출입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
 ②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등을 감안하여 D-SIB 추가자본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
 ③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†
 † '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는 '20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

□ **(평가부문)** 5개 평가부문의 부문별 평가지표는 동일 가중치로 평가

평가 부문	D-SIB 평가지표	가중치
1. 규모(20%)	총익스포저	20%
2. 상호연계성(20%)	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	6.7%
	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	6.7%
	증권 발행규모	6.7%
3. 대체가능성(20%)	원화결제규모	6.7%
	외화결제규모	6.7%
	보호예수자산	6.7%
4. 복잡성(20%)	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	10%
	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*	10%
5. 국내 특수요인(20%)	외화부채	10%
	가계대출	10%
총 합	5개 부문 11개 지표	100%

* 2018.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9호 시행으로 명칭 변경(변경전 : 당기손익 인식증권 및 매도가능금융자산)

□ **(평가점수)** 개별 은행·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(「시장점유율」 개념, 총점 10,000점)

- 총점 600점 이상을 D-SIB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